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대책

Management Policy for Children's Food Safety

이 재 용
Jae-yong Lee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Division of Food Safety Policy,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1. 서론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증가 및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는 2005년 11,028천명에서 2030년 6,326천명으로 줄어들고 노령인구는 4,367천명에서 11,811천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 이러한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행은 젊은 세대의 사회 ·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비용의 조달이 필요하므로,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지출(cost)로 이해한 전통적인 정책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인 패러다임으로서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사회투자로 인식하고 과감한 사회적 투자를 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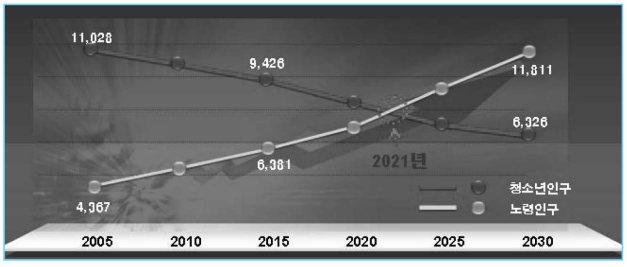

그림 1 장래인구 추계(통계청, 2006)

2. 현황 및 문제점

1)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05년 중국산 김치에서의 기생충란 발견, '06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고 등 최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식품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식품안전사고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11월 한국갤럽에서 학부모 및 보호자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그림 2)에 따르면,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의 6.7%만이 어린이 먹을거리가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54.4%는 어린이 먹을거리가 안

*Corresponding author : Lee, Jae-Yong
Tel : 02-380-1742
E-mail : jaeyong@kfd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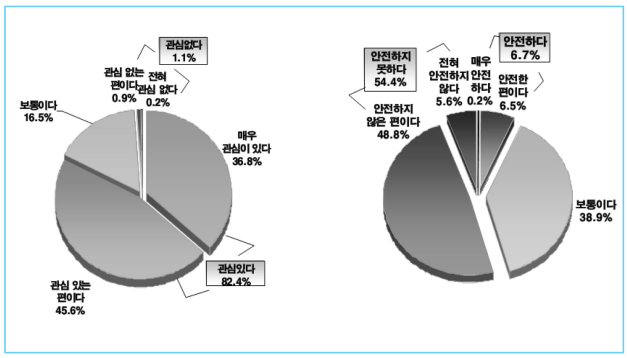

그림 2 학부모 · 보호자 1,00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한국갤럽, '06.11)

전하지 않다고 대답하여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었다.

어린이가 구매 · 섭취하는 식품 중 부모 등 어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주변의 먹을거리 관리가 가장 취약하다. 학교 주변의 문구점, 소규모 상점 등에서는 값싸고(100~200원) 질이 낮은 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사탕, 초콜릿, 젤리 등의 과자 판매를 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07. 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으며, 문구점, 노점상 등에서 냉장고, 식품보관대 등의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음식을 조리 · 판매하는 등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먹을거리는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2005년, 서울식약청).

어린이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학교 주변의 소규모 상점 뿐 만이 아니다. 2003년부터 초 · 중 · 고, 특수학교 등에서 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가 1끼 이상을 급식을 통해 해결하는 등 학교 급식 제도를 현재 거의 100% 도입에 성공하여 양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학교급식에서의 식중독 환자수가 전체 집단급식 대상수의 64%를 차지하는 등 학교 급식시설의 위생관리가 취약하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영양섭취 과잉과 운동량 부족으로 인한 생활 습관병 증가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학원교육, 컴퓨터 및 TV 시청 등 도시형 생활습관으로 인한 활동영역 · 시간이 감소되는 등 운동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생활시간 중 TV시청 및 컴퓨터 사용시간은 평일 142분, 일요일 273분(2005년, 통계청)으로 교제 및 여가 활동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는 우리나라 중 · 고생의 에너지 섭취량은 증가한 반면 신체 활동 부족 등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여 청소년 비만이 2배 이상 급속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영양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운동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소아 및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율이 급격히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18세 이하의 비만율은 '98년 6.6%에서 '05년 10.2%로 1.5배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미국 6~11세 소아의 비만율이 '80년 7%에서 '00년 15.3%로 20년 사이 2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급속한 증가 추세이다. 어린이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소아 비만의 40%, 청소년 비만의 70%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과체중과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의료비(6,212억원)와 간접비까지 포함하면 1.4조원 수준으로 추정(한국영양학회지, 2005)되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을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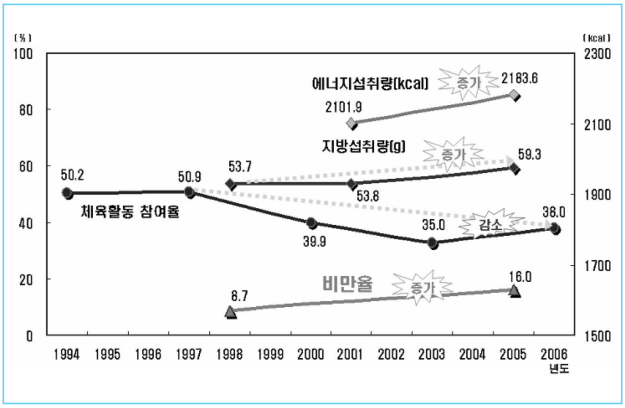

그림 3 중 · 고생 8만명 건강행태 조사 발표자료(질병관리본부, '07.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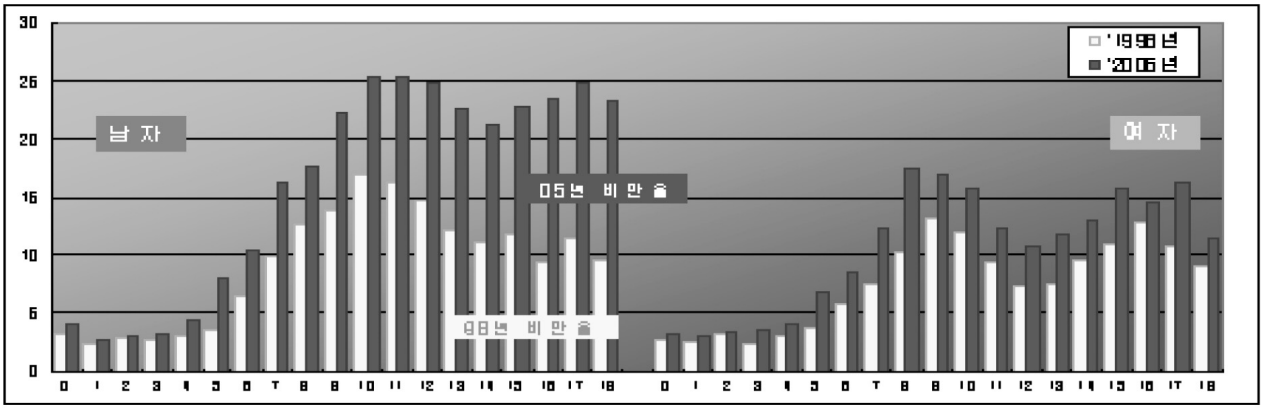

그림 4. 어린이 비만율 조사 결과(국민건강영양조사, '98년/'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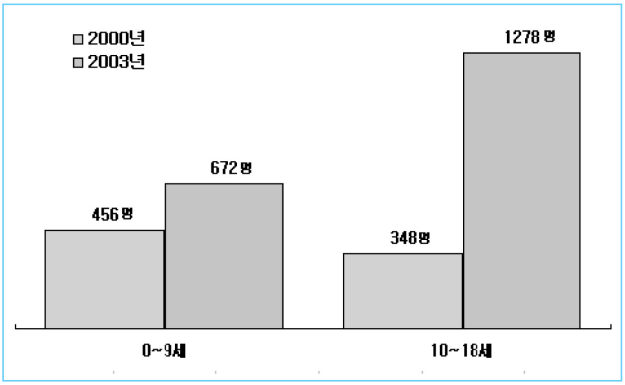

그림 5. 비만진료 인원 변화 추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따라서, 정부에서는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 위생 및 영양수준을 철저히 관리하여 유해성분,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였다('08.3.23). 다음에서는 동 법률의 제정을 통해 정부가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3.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대책

1)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등·하교길에 자신의 구매 의사결정에 의해 문방구, 소규모 상점 등에서 불량식품, 열량은 높으나 영양적 가치가 없는 식품이나 경품으로 얻을 수 있는 스티커나 장난감 등에 영향을 받아 식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아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학교와 학교주변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고 Junk food 등 어린이의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구매·섭취하지 않도록 표 1과 같이 여러 가지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제정·공포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가 학교안팎의 매점·자판기 등을 통해 잘못된 식습관을 조장할 수 있는 식품 등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학교주변 문방구, 구멍가게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값싼 저질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학교와 학교주변 200m를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였다. 해당 구역에서는 어린이의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였으며,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의 판매시설을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시·군·구청장이 전담관

<표 1> 국가별 학교와 주변지역 식품판매 규제 현황

국 가	학교 내 식품 판매에 관한 법률 및 현황
한 국	○ 청소년위원회에서 522개 청소년수련시설을 시작으로 음료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행 중 (2006.06) - 전국 90.6%의 학교에서 자판기에서, 93.7%가 매점에서 탄산음료 판매
브라질	○ 브라질 lorianoplis, Rio de Janeiro 및 Sao Paulo 지자체는 학교 내에서 청량음료와 과자 판매와 유통은 금지 *[Lei No.5854 (2001) Municipal Decree No. 21217 (2002)]*
프랑스	○ 프랑스 의회는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모두에서 사탕이나 탄산음료 등 정크푸드 판매용 자판기를 없애기로 의결하여 2005년 9월부터 시행 (Public Health Bill, 2004)
영 국	○ 스코틀랜드 의회는 학교급식법안의 개정을 제안하여 주립학교 내 정크푸드의 판촉행사와 판매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함 ○ 노동부는 1년 내로 학교에서 정크푸드를 추방하기 위한 법안 발표 *[Children Food Bill, 2005.09]*
일 본	○ 학교 내에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규 식사 외의 식품 섭취 금지 *[School Lunch Law of 1954, as amended]*
말레이시아	○ '정크 푸드'는 학교 내에서 판매를 금지 *[Directive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1999)]*
호 주	○ 호주 빅토리아 주는 2006년 말부터 공립학교에서 고칼로리 청량음료, 과일주스의 교내 판매와 반입을 금지
싱가포르	○ 학교와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식품과 음료에 대한 승인과 감시 진행 *[Ministry of Education funded programme "Trim and Fit" (1992)]*
미 국	○ 최소영양가식품 (Foods of minimum nutritional value ;FMNV)은 학교 점심시간 중 식품판매장소에서의 판매를 금지 *[Section 210 (Appendix B) of the regulations of the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1988, amended 1994) and Section 220 (Appendix B) of the regulations of the School Breakfast Program (1980, amended 1989)]* ○ 18개의 주에서는 최소영양가식품의 판매 시간 및 장소를 명시(2003~6) ○ 미국음료협회는 2009년부터 미국 내 모든 공립학교 자판기 및 구내식당에서 물과 주스, 저지방 우유만 판매하기로 자율 결정 ○ USDA가 아침, 점심 식사의 영양수준을 법률로 관리하고 있는 현행 법률*(Child Nutrition Act of 1966)*을 보완하여 급식 뿐 아니라 학교 내와 수업시간 내 시간동안 판매되는 식품에 관한 기준설정을 추가함으로써 학교 내 모든 음식 판매를 관리하는 법률이 2005년 5월 연방의회 상원에 클린턴 전 대통령 등이 제안한 상태임 *[Child Nutrition Promotion and School Lunch Protection Act, S. 2592]*

리원을 배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소를 계도 ·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주변의 열악한 식품판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2)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등 규제 강화

2003년 개최된 WHO/FAO 전문위원회에서는 고열량 · 저영양 식품에 대한 과다한 광고를 비만유발 원인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또한, 영국 식품기준청(FSA)에서는 오후 9시 이전 지방, 당, 소금이 많은 음식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프랑스는 고지방, 고당식품에 대하여 어린이 TV방송 중 광고 금지 조치를 하였고 음료나 식품회사 광고예산의 1.5%를 건전한 식습관 촉진운동 비용으로 국가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방송법에 따른 방송광고심의규정에서는 "어린이대상 방송광고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일반적인 수준의 제한 규정만 존재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광고를 규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였다. 실제로, 2006년도에 식약청에서 의뢰 · 분석한 '국내 어린이의 TV광고를 통한 식품광고 노출도 조사'에 따르

<표 2> 어린이 식품광고 규제의 제외국 사례

국가별	광고 규제 내용
유 럽	○ 유럽연합(EU)은 어린이 광고 규제를 '유럽국가 전체'가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국경없는 시청각 미디어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마련('07) - 회원국은 미디어제공자들에게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방송에서 지방, 트랜스지방산, 소금/나트륨, 당 등 건강에 해로운 성분을 다량 함유한 식음료의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하도록 장려하여야 함. ○ 유럽음료연합에서 12살 미만의 어린이 대상 인쇄매체, 웹사이트, 텔레비전에서 청량음료의 광고 금지를 자발적으로 동의('06)
영 국	○ 아일랜드 지역은 아동광고규정을 도입하여 패스트푸드나 사탕류 및 탄산음료의 광고에 대한 건강 경고 메시지를 적용 *(Children's Advertising Code)* ○ 영국의 '방송통신 커뮤니케이션위원회'(Ofcom)은 '08.1월부터 9시 이전 16세 미만 어린이 TV 프로그램 전후에서 '정크푸드' 광고 전면 금지 - 광고금지 식품 : FSA의 영양성분기준(Nurient Profile model)에 따라 분류된 식품 - 광고금지 프로그램 : 어린이 시청률이 성인 시청률보다 20%이상 높은 프로그램(⇒ 어린이 시청률이 높더라도 성인시 청률과의 차이가 적으면 제외될 수 있음)
프랑스	○ 고지방, 고당식품은 어린이 TV방송 중의 광고를 금지('04) - *Public Health Law* 개정 중 ○ 음료나 식품업계의 전체 광고의 7%를 건강 관련 메시지 포함을 법률로 규제하며, 회사의 연간 광고예산의 1.5%를 건전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국가 기관에 준조세 형식으로 납부('06)
오스트리아	○ 오후 8시 15분 이전의 어린이 방송시간대에는 광고 금지
그리스	○ 오후 7시~10시 사이의 어린이 광고 전면 금지
핀란드	○ 소비자보호법의 '소비자의 관점에서 부적당한 제품은 광고할 수 없음'과 '건강을 해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없음'을 근거로 하여 Happy Meal Toy가 식품보다 주요제품으로 인식되게 하는 '부적절한' 광고임을 들어 규제 - *어린이광고에 대한 소비자 옴브즈맨 가이드라인, 소비자보호법, TV와 라디오 규제안*
스웨덴	○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모든 광고 금지 (패스트푸드 포함) *('91)* - *라디오와 텔레비전 관련법*
노르웨이,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 아동 프로그램 시간대 광고를 금지
호주 /뉴질랜드	○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가 어린이가 하루에 노출되는 사탕, 청량음료, 패스트푸드광고가 11건'이라며 이에 대한 규제를 요구했으나, 연합정부는 '비만과 광고'와의 관계 입증의 부족으로 거부
미국	○ 1970년대 어린이 대상 광고 규제를 시도하였으나, 현재는 업체의 자율규제
미국 10대 식품대기업	○ 12세 미만 어린이 대상 식음료 광고에 대한 자체 규제안 발표('06) -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광고 금지 - 할리우드 캐릭터를 활용한 정크푸드 광고 자제 - 온라인 게임을 통한 헬스푸드 광고를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비의 절반 가량을 헬스푸드와 비만해소 부문에 투입 ※ 미국 어린이 식음료 시장의 2/3이상을 차지하는 10대 대형기업(맥도날드, 코카콜라, 펩시콜라, 캠벨수프, 켈로그, 유니레버, 크래프트, 허시, 제너럴 밀스 및 캐드버리) 참여
Heinz	○ 미취학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광고 자체 규제('06)
Nestle	○ '어린이 대상 식품의 광고는 반드시 나이에 적절해야함'으로 지침 수정('06)
Kraft Foods	○ 6세~11세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방송 및 인쇄 매체에 영양 기준이 맞지 않는 자사 식품광고를 전면 중단('06)
국제소비자기구(CI)& 국제비만 특별조사 위원회(IOTF)	○ '어린이 대상 식품 마케팅에 대한 국제규약' 발표('08.3) - 오전 6시~오후 9시에 고당, 고지방, 고나트륨의 비 건강식품의 라디오 · TV 광고 금지 - 뉴미디어(웹사이트 등)에서 비건강식품의 마케팅 규제 - 비건강식품의 학교 내 판촉 금지 - 공짜 장난감 등 어린이 판촉을 규제 - 비건강식품 마케팅에 스타 광고, 만화 캐릭터 사용 제한 ※ 각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에 동 규약의 채택과 법제화를 촉구

면 어린이 프로그램의 TV광고의 식품광고 비율이 1/3 이상이며, 어린이 프로그램의 전후에 나오는 식품광고에서 당과 나트륨이 높은 가공식품의 비율이 2/3이상 등 문제점이 부각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09년도에는 1단계로 공중파, 케이블, 위성 등 모든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에서 미끼 상품이 든 과자?음료?패스트푸드 광고를 금지하고 '10년부터는 일정 시간대의 TV방송에서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3) 부모와 어린이의 식품 선택권 강화

부모와 어린이가 식품을 선택 · 구매할 때에 식품 등에 표시되어 있는 영양성분을 읽고 이를 구매에 활용하도록 하는 영양성분 색상표시제, 패스트푸드 영양성분 표시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2007년에는 1단계로 영양표시모델을 보급하여 외식, 패스트푸드 업체 등에서 영양성분 표시를 자율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대형패스트푸드 업체 및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에서 식품안전 및 영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동 법률에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영양위해성분 저감화 추진

WHO는 나트륨 과다 섭취시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하루 2,000mg 이하로 나트륨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짠맛에 길들여진 어린이들의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여 7~12세의 어린이는 현재 WHO 권장수준의 2배 이상 섭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식사의 제공 주체별로 나트륨 섭취량이 가정에서 음식을 섭취한 경우에 가장 낮으며, 외식으로 섭취한 경우에는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는데(2007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를 통하여 가공식품업계나 외식업체에서 나트륨의 함량을 줄여서 먹을거리는 제공하는 것 또한 어린이의 나트륨 섭취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에서는 단맛 가공식품, 탄산음료 등 고당질과 열량위주의 간식 소비 또한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식품에서의 당, 나트륨, 트랜스 지방 등 영양위해성분에 대한 저감화를 추진하고자 가공식품 중 당 · 나트륨 함량 모니터링 및 DB 구축으로 섭취량을 평가하고, 민 · 관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였다. 아울러, 트랜스 지방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07.12에 트랜스 지방 함량표시를 의무화하였다. 정부는 2010년까지 당 · 나트륨의 섭취량을 10% 이상 감소시키고, 모든 식품에서의 트랜스 지방 1% 미만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5) 어린이 단체급식 관리 강화

2006년도에 발생한 식중독으로 인한 환자의 67%가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등 어린이 단체급식시설에서 발생한 것을 볼 때,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위생관리나 조리과정의 안전 · 영양 관리가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식재료의 검수 · 관리, 검식 및 배식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인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사가 우선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어야하나, 현재 어린이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재정여건상 영양사 확보가 곤란하여 체계적 위생 · 영양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보육시설 영양사 확보률 : 13.4%, 상근영양사 : 20.6%). 따라서, 학교급식 위생 · 영양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급식 종합대책'과 연계 추진하고 각 지자체에 '어린이 급식관리

<표 3>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방안

주요 업무	- 집단급식소에 대한 영양 및 위생관리 지원 - 안전하고 품질좋은 식재료 공급 관리
운영 방안	- 시 · 군 · 구별로 10~20명의 전문인력 배치 - 시 · 도 별 1개소씩 시범운영을 거쳐 각 시 · 군 · 구로 확대 추진
재원 조달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 활용 및 정부예산 지원

지원센터' 설치 · 운영함으로써 영양사, 위생전문가 등을 배치하여 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 수련원 등의 단체급식 관리 및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6) 식품안전 · 영양 교육 및 홍보 강화

어린이의 식습관이 성인기의 질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 등에서는 식품안전과 영양관련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교육체계 등이 상당히 미흡하다. 어린이 먹을거리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린이가 건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식품안전 · 영양평가원을 설치 · 운영하여 어린이 식생활에 대한 교육과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DB를 구축하여 이를 학교 순회 교육 등에 사용하는 등 교육 · 홍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 시행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정부기관의 책임을 부과하고, 초등학교 학교장 재량시간 또는 특별시간 활용하거나 교육청, 대한영양사회 등과 연계하여 어린이 대상 영양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7) 우수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의 조사결과(참고문헌)에 따르면, 5~12세 아동 및 13~19세 청소년은 각각 52%, 72%가 영양표시를 읽지 않고 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 어린이와 부모에 대한 영양표시 등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고 이에 따라 영양표시 인지도 · 이해도가 낮아 어린이와 부모가 식품 등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있는 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우수식품 또는 어린이 권장식품에 대하여 어린이와 부모 등이 쉽게 영양성분에 대하여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녹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영양위해성분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식품업계로 하여금 영양성분을 고루 갖춘 우수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품환경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8)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영양수준 평가 관리

우리나라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과 영양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객관적인 지표가 조사시스템이 부재되어 있다. 따라서, 어린이 먹을거리 환경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관적인 인식도와 객관적인 지표를 포괄 할 수 있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영양 평가체계 구축하고자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년마다 비만율, 영양위해성분 저감화율, 급식관리수준 등을 활용하여 영양 · 안전수준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시 · 군 ·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먹을거리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 · 공개하여 먹을거리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였다.

<표 4> 외국과 우리나라 교육과정 중 영양교육 비교

국 가	교육과정	교육 내용	비 고
미국 캘리포니아	유치원 ~ 초등 6년	- 식품의 선택과 섭취태도의 형성을 반복 교육	저학년 교육 강조
미국 펜실베니아	초등 1 ~ 6년	- 3학년 수준에서 안전한 식품 취급 요령, 균형식사 중요성, 1회 분량, 식품군별 식품 구별 (※ 우리나라 5학년 수준)	교육 내용 수준 높음
싱가포르	초등 1 ~ 6년	- 고학년에서 균형 잡힌 식사구성 및 활동정도에 따른 영양요구량의 평가 (※ 우리나라 중학교 수준)	교육 내용 수준 높음
우리나라	초등 5, 6년	- 주로 조리 위주의 교육	

4. 요약 및 결론

어린이는 건강에 취약하고 유해한 식품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은 반면, 성장 · 발달에 필요한 식품의 안전 · 영양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국가 차원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식품위생법」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에 관한 기본법이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에게 적용하여 어린이 먹을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 건강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식품위생법」의 특성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먹을거리에 중심을 두어서 규율을 제정할 수 없고,「학교급식법」,「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유아교육법」등은 주로 해당 시설 내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이므로 어린이의 안전한 식생활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 ·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 위생 및 영양수준을 철저히 관리하여 유해성분,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하게 되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패스트푸드 영양성분 표시의무화, 식품과 함께 장난감 등을 무료제공 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의 금지, 고열량 · 저영양 식품에 대한 TV광고 일부 제한 · 금지, 영양성분 색상 표시제 도입,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운영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률을 통해서 가공식품을 생산 · 공급하는 업체, 유통단계에 있는 업체,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업체, 그리고 학교 앞에서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등 어린이에게 식품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자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의 목표이다.